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	2017.08.2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신축공사 / 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24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<p>[심의 내용] 건축 + 교통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건축·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&lt; 건축 분야 &gt;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접공원~주민운동시설~공공보행통로가 단절되지 않고 원활히 연결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.</li> <li>○ 단지의 과밀한 느낌이 완화되도록 입면 색채계획을 상승감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.(어두운 색을 하부에, 밝은 색은 상부에 계획하여 중량감을 고려한 색채 계획을 권장함.)</li> <li>○ 전면도로에 면한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의 연도 변 선형을 조정하기 바람.</li> <li>○ 지반층의 공동주택 출입구 홀의 공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므로 확장 가능성을 검토 바람.</li> <li>○ 단지 내 대지 레벨 차이로 인한 보행약자의 각 동으로의 보행 접근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세부적으로 검토 바람.</li> <li>○ 상부 내력벽체가 지하주차장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검토 바람.</li> <li>○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화장실 위치를 조정하여 주차공간을 계획 바람.</li> <li>○ 입주민들의 이사 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바람.</li> <li>○ 화장실의 출입문 폭이 협소하므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출입문의 폭을 850mm이상으로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.</li> <li>○ 작은 면적의 침실을 확장할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수정·보완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.</li> <li>○ 59형의 발코니 면적이 과도해보이므로 사업승인 시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기 바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7. 08. 2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심의일자	2017.08.2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신축공사 / 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24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<p>[심의 내용] 건축 + 교통 심의</p> <p>&lt; 건축 분야 &gt;(계속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계획(계속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, 84㎡A·B·C·D형 20% 완화 인정함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방차 진입 부위는 소방차 하중을 고려한 구조계획을 검토 바람.</li> </ul> <p>&lt; 교통 분야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·출입구 계획은 ‘사업지 진·출입구 2개소’ 대안으로 결정하기 바람.</li> <li>○ 지하3층 비주거에서 주거주차장 방문자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바람.</li> <li>○ 지하4층 주거·비주거 혼합 진·출입램프에서 지하3층 비주거주차장으로 회전 시 진출부 회전반경과 평탄구간이 협소하므로 보완하기 바람.</li> </ul> <p>&lt; 공통사항 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우수(그린2)등급 이상</li> <li>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1등급 이상</li> <li>다.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: 147.5kWh/㎡·y(주거), 205.8kWh/㎡·y(부대복리) 162.0kWh/㎡·y(판매), 223.0kWh/㎡·y(업무)</li> </ul> </li> <li>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</li> <li>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<sub>2</sub>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7. 08. 2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	2017.08.2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신축공사 / 동작구 상도동 23-42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24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+ 교통 심의			
<b>&lt; 공통사항 &gt;(계속)</b>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'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'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7. 08. 22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